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피해학생 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10.24. 공포, 2024.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제2조의2)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수행 업무, 기관의 성립·운영 등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제2조의3)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대상 및 수행 업무, 기관의 계획 수립·운영 등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 도입(제8조)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

라. 교육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제10조)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 전담 치유·회복 전문기관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운영 업무 위탁 수행 시 인증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도록 함

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제11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 조사관의 자격·역할 등을 정함

바.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제14조, 제31조의2)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조사관 지원·협력,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 역할을 강화함

사. 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제17조)

학교관리자(학교의 장 및 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아. 즉시분리 관련 안내서 위임 근거 마련(제17조의2)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분리 기간, 방법 등을 교육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제18조의2)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의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 임면기준 등을 정함

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제18조의3)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내용·방법 및 상환청
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

카. 학생부 기재 회피 목적 자퇴 방지(제20조의2)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
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함

타.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보장(제21조)

기존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더해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함

파.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사실확인 조사(제22조)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징계 미이행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교육감이 조사하여야 하는 상황, 조사 방법 등을 정함

하.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제23조의2)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의 구
체적인 내용, 방법, 예외 등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8. ~ 1. 22.) 예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등 장기치료, 전문적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등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관련 조사·분석 등 연구
4. 그 밖에 학생 치유·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전문교육기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에는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문교육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문교육기관은 기관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정하는 바에 대해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능의 특수성에 따라 한 개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핵심 강사 양성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을 “학교폭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회복,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자문 등 통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교육감”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이하 “학교폭력 제로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둔다.

1.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 검토
2. 제1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학교에 통보 및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유프로그램”을 “치유프로그램 운영, 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제2항에 따른 피해학생 전담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업무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전담하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1개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사전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가·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2.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의 학교폭력 조사결과 보고

3. 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제1호에 따른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자문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

제17조의 제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3항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및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의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 및 방법 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상담·심리 전문가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해학생 보호와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관련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4. 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해학생 보호와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관련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5. 학생·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학생·청소년 대상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학생·청소년 보호·지원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

의4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피해학생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증 사본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의2(가해학생 학적변동 제한)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전학 등 가해학생의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출석정지 조치”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로 한다.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필요한 조치 방식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1항”을 “법 제17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그 경위 등을 서면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학교의 장이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해학생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법 제17조제15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

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본안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치의 이행기간 내에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심판의
진행상황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
우 해당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에 따른 조사관의 조사에 대한 자문 및 정보공유 등 지원·
협력
6. 제8조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6조제3항</u> 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 ----- ----- <u>제6조제4항</u> ----- ----- ----- ----- ----- <u>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u> <u>2.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등 장기치료, 전문적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등</u> <u>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관련 조사·분석 등 연구</u>

4. 그 밖에 학생 치유·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전문교육기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에는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전문교육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문교육기관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정하는 바에 대해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능의 특수성에 따라 한 개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핵심 강사 양성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 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4. <u>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u> 5. <u>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업무</u> ③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u> ④ <u>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⑤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 ----- -----
--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생략)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학교폭력 -----

3. -----
----- 회복,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자문 등 통합 지원---

4. -----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이하 “학교폭력 제로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둔다.

1.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 검토

2. 제1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학교에 통보 및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
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
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제
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

-----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
호시설 운영 업무

4.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업무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을 전담하여 상담 및 치유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1개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③ -----
치유프로그램 운영, 제1항제3호
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제2항
에 따른 피해학생 전담 전문기
관 -----.

1. ~ 6.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위탁
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

<신 설>

③ (생 략)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
의 위탁 등) (생 략)

<신 설>

· 단체· 시설에 대한 사전 인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평가에 관
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
의 위탁 등)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 수행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교폭
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1.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
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
상인 사람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신 설>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

<신 설>

<신 설>

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
에 따라 조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관으
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
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가·피해사실에 대
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2.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의 학교폭력 조사결과
보고

<신 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신 설>

3. 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제1호에 따른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자문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
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다만,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
나 위촉할 때 제5호의2에 해당
하는 사람은 포함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
교전담경찰관

6. ~ 7. (생 략)

② ~ ⑨ (생 략)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신
설>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3항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및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의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 6. (생략)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신 설>

<신 설>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5조제7항-----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제5항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 및 방법 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상담·심리 전문가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해학생 보호와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관련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4. 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해학생 보호와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관련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5. 학생·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학생·청소년 대상 상담 활동

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
한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
회복지단체에서 학생·청소년
보호·지원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 및 지
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
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
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
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
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
한다.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
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
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
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
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촬영물 등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피해학생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증 사본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신 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의2(가해학생 학적변동 제한)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전학 등 가해학생의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

-----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필요한 조치 방식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
----- . -----

----- .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등) ① --

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 법 제17조제15항-----

②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그 경위 등을 서면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학교의 장이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해학생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법 제1
7조제15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의2(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
의4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
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
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본
안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치의 이행기간 내에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심판의 진행상황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생략)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③ (생략)	<u>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u>④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1조에 따른 조사관의 조사에 대한 자문 및 정보공유 등 지원·협력</u> 6. <u>제8조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u> 7. <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u>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78